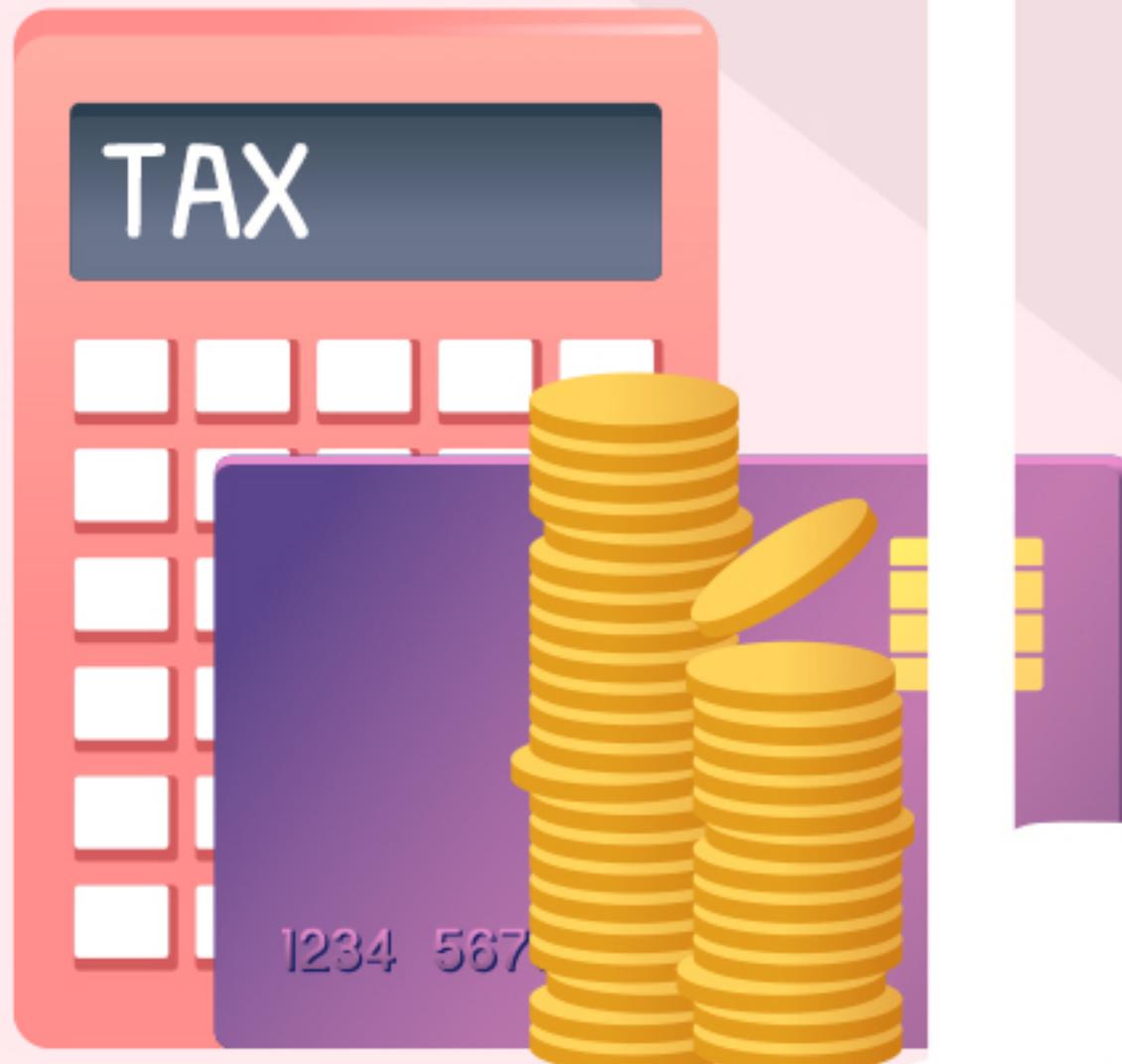


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





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



공제대상

총 급여액의 25%를
초과하는
신용카드 사용액



공제율

15%



한도

총 급여액의
구간에 따라
200만원~300만원

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
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.
(2019년 12월 31일까지)


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신설!



공제대상

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
근로자의 도서·공연
이용금액
(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
신용카드 등 사용액)



공제율

30%



한도

100만원

2018년 7월 1일 이후

도서 구입,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

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!



월세 세액공제 확대!



공제대상

총 급여액
7천만원 이하의
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



공제율

총 급여액
5,500만원 이하 : 12%
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
7천만원 이하 : 10%



한도

총 급여액
구간에 따라
75만원~90만원

총 급여액 **5,500만원 이하**인 근로자의 경우
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**10%에서 12%로 인상되었습니다.**

※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
근로소득자는 공제율 10%입니다.



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!



공제대상

중소기업에
취업한지 5년 미만인
근로자의
2018년 귀속 소득분에
대한 소득세



공제율

90%



감면대상

청년 근로자 연령

근로계약 체결일
현재 연령이
만15세 이상 34세 이하

감면 대상 기간이 취업 후 **3년에서 5년으로,**
감면율은 **70%에서 90%로 상향조정**되었습니다.

이 외에도 의료비, 전세보증금 보험료,
자녀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달라졌습니다!

꼼꼼히 체크해서

모두 13월의 월급을 받도록해요 😊

